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7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이춘석 • 윤준병 • 이학영

한병도 • 이연희 • 정준호

박희승 • 김윤덕 • 오세희

백선희 • 한민수 • 이성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·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.

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,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·공간 구축,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제24조제2항 중 "비용의"를 "비용과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 비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	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	
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	
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	
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
	을 위한 교육시설・공간 구
	축,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제
	공하는 사업
<u>3.</u> ~ <u>5.</u> (생 략)	$4. \sim 6.$ (현행 제3호부터 제5
	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주거・교통기반의 확충)	제24조(주거・교통기반의 확충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	2
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	
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	
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	
및 주택개수・보수 등에 필요	
한 <u>비용의</u> 일부를 지원할 수	비용과 노후화된 빈집의

있다. ③ ~ ⑥ (생 략) <u>철거 비용</u>----.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